

## 성남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공고 및 통지
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35조의13(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), 제35조의14(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)에 의거 성남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,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.

2025년 11월 18일

- 아 래 -

- 1. 일 시** : 2025년 12월 13일(토) 오전 11시
- 2. 장 소** : 성남동중학교 체육관(성남시 중원구 광명로361번길 23)
- 3. 참석자격** :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대리인
- 4. 안 건** : 제1호 안건 : 주민대표회의 구성의 건  
제2호 안건 : 주민협의체 운영규정(안) 확정건의 건  
제3호 안건 : 주민협의체 예산,회계 및 보수 규정(안) 확정건의 건  
제4호 안건 : 주민협의체 회계처리규정 세칙(안) 확정건의 건  
제5호 안건 : 선출업무관리위원회 수당 지급건의 건  
제6호 안건 :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예산(안) 승인의 건
- 5. 전체회의 참석 시 지참물 및 유의사항**(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체회의 입장이 불가합니다.)
  - 신분증 및 전체회의자료 지참
  -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인(토지등소유자)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, 위임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 등) 지참  
※ 대리인 자격 : (대표)토지등소유자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형제자매 중 성년인 자 1인
  - 토지등소유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(가족동반 불가)하며, 공유지분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(소정 양식)를 작성하여 신고된 대표자(토지등소유자) 또는 그 대리인 1인만 참석할 수 있음
- 6. 기타사항**
  - 통지 이후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등소유자는 전체회의 당일 소유권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필히 지참하여야만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.
  - 당일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직접 작성하신 서면결의서는 전체회의 전일(12월 12일(금) 오후 6시)까지 내 경기남부지역본부 도시정비2팀으로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제출 또는 홍보요원 최종후보자를 통해 제출(기한 내 도달분만 인정)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※ 서면결의서 우편, 직접 방문 제출 기간 : '25.11.22(토)~'25.12.12(금) 오후 6시까지  
\* 방문 접수 시간 : 평일 오전 09시부터 18시(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수 받지 않음)

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